특별교육이수조치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6구합○○○	사건유형	학교폭력
원 고	□□□ 외 1	피 고	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
판결선고일	2017.01.06.	비 고	
사건개요	○○○은 2016.03.02. 원고들로부터 금품갈취,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였고, 원고들은 2016.03.03.경찰과 피고의 학교 학생부장 및 학생부 교사에게 보호자 없이 진술을 하였다. 그 후 피고는 2016.03.11.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들에게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처분하였다. 그러나 원고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외 ○○○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학교폭력 사실여부 확인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		
주 문	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		
청구(항소)취지	피고가 2016.03.15. 원고들에 대하여 한 특별 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취소한다.		
판결이유	원고들은 2015년 중순경 이후 2016년 초경까지 '○○○이 답답하다.'는 이유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○○○의 뺨, 뒤통수, 가슴, 사타구니 부위를 수시로 때렸고, 원고 ●●●의 경우 원고 ◇◇◇이 보기에도 상당히 세게 ○○○을 때린 사실이 있고 반면 ○○○은 원고 ◇◇◇을 때린 적이 없고 맞기만 했으며, ○○○이 ●●●을 때리기도 했으나 때린 비율은 20~30%로에 불과하다. 원고 ●●●은 ○○○으로부터 양해나 동의를 받은바 없이 ○○○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하체 사진을 촬영하고 ○○○을 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기까지 하였으며, 사진의 경우 보관은 물론 촬영 대상자의 관여 없이 그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 전달이나 공개가 용이하다는 사정을 고려하면, 이로 인하여 ○○○이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. 또한 원고들은 ○○○이 원고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고도 빨리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입원을 한 상황에서조차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입원하는 등 유난을 떤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○○○을 윽박지르기도 하였던 점, ○○○은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신고 이후 ◇◇◇◇◇◇◇◇◇로 전학한 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'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'을 위하여 결석하거나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 사이버학교에 입교하기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,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○○○의 신체·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것으로 친구들 간에 수인될 수 있는 장난의 정도를 넘어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원고들이 ○○○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		
결 론	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.		